

스위스 경찰관서 견문기

〈치안연구소 연구관 경감〉 이 동 권

치안연구소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연구추진을 위해 '99. 6. 20~6. 30간 공무해외출장차 스위스를 방문, 스위스 형사사법제도와 경찰제도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방문처별 수행사항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방문처별 수행사항

1. 스위스 개관

- 정식국명 :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
- ※ '스위스' 라는 이름은 1291년 산악동맹지역의 하나인 Schwyz에서 유래, 정식국명은 라틴어 "Confoederation Helvetica"(헬베티아 연방)로서 흔히 "CH"로 약칭
- 수 도 : Bern
- 주 요 주 : Zürich(117만명), Bern(95만명), Basel(45만명), Vaud(60만명), Geneva(40만명) <1998년 현재>

- 인 구 : 710만명(인구밀도 : 173명/k㎡)
- 총 면 적 : 41만k㎡(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
- 인 종 : 독일, 프랑스, 이태리게 인종
- 언 어 : 독일어(64%), 불어(19%), 이태리어(7.6%), 레토 로만-슈(고대로마어) 잔재어(0.6%), 기타(8.9%)
- 종 교 : 구교(46%), 신교(44%), 기타(8%)
- 정 체 : 연방공화국 26개 칸톤(이중 6개는 Half Kanton)
- 정부형태 : 회의체 정부(7명으로 구성된 연방내각 : Bundesrat)

- 대통령 : Ms. Ruth Dreifuss 내무 장관
- 부 대통령 : Mr. Adolf Ogi 국방·체육 장관
- 외무장관 : Mr. Coti Flavio

* 정부는 7각료밖에 없으며 그중 한명이 1년간 윤번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함.

-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
 - 구성 : 200명의 국민비례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회의(하원)와 각 칸톤에서 2명씩 파견된 46명으로 구성된 칸톤대표회의(상원)으로 구성
 - 특색 : 법률은 양원에서 각각 독립하여 심의하며 양원 모두 찬성해야 성립됨
- 헌 법 : 1848년 제정, 1874년, 1978년 개정
- 국 경 일 : 8. 1(1291년 산악 3개 지역의 동맹서약일)
- 유엔관계 : 미가입('86. 3. 16 국민투표에서 부결)
- 국내 총생산 : US\$ 2,639억(1998년)
- 1인당 국민소득 : US\$ 37,028(1998년)
- 화폐단위 : Swiss Franc(S Fr.)
 - 1 FranKen(Swiss Franc)
 - = 100 Rappen(Centimies)
 - 1\$ = 약 1.52 S Fr(1999. 5. 현재)
- 주요제원
 - 남북최장길이 : 220km

- 동서최장길이 : 348km
- 국경선 연장길이 : 1,182km
- 주요고봉 : Dufour봉 4,634m, Dom봉 4,545m, Weisshorn봉 4,506m, Mattehorm봉 4,478m
- 주요호수(약1,500개) : Leman호수 581km², Bodensee호수 541km² Neuchatel호수 218km², Luzern호수 114km²

○ 우리와의 관계

스위스는 중립주의 원칙(1815년 비인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됨)상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내세워 남북한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듬해 상호 대사관을 설치한 후 1997년 교역량은 44억불에 이르고 있다.

2 연방검찰청(Bundesanwaltshaft)과 연방경찰청(Bundesamt für Polizeiwesen)

- 접촉인물 : Rudolf Wyss(Vizedirektor)
Dieter Stüssi(Chef Koodination)

(1) 법률체계

- 1874년의 연방헌법제정
- 최고 법원은 연방법원(로잔느에 소재)이며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26명의 판사와 12명의 예비판사로 구성하여 최고의 민

사법전을 집행하며 반국가적 사범을 다스리고 또 각 칸톤의 헌법준수 여부를 심의함.

- 형사부는 판사 4인 합의체로 구성하며 연방순회법원과 연방형사법원으로 구성됨

(2) 연방형사법

- 형법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으로 제정되고 州法은 경범죄나 행정벌, 재정벌 위반의 벌칙규정 정도만 규제
- 형사소송법은 연방법과주법으로 나누되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 혹은 정치성이 강한 범죄는 연방형사법원의 관할로 되어있고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주법원의 관할로 함

(3) 경찰조직

가. 개관

스위스 경찰의 경우에는 연방경찰과 칸톤경찰이 각각 연방정부와 칸톤정부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국가경찰적 성격을 띠는 것에 반해, 도시경찰은 자치단체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치경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 법무경찰부

스위스의 경찰업무는 연방의 법무경찰부(EJPD)에 속해 있고 이에는 11개의 廳이 있

는데 그중 연방검찰청(Bundesanwaltschaft), 연방경찰청(Bundesamt für polizeiwesen), 연방외사청(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의 3국이 주로 경찰임무를 수행하며 연방경찰청에는 460여명(전체경찰력은 210,613명 : 99. 1. 1 현재)이 근무중임

※ 최근 경찰조직 개편으로 종래 연방검찰청에 속해 있던 연방경찰청과 연방안전국이 분리, 연방경찰청에 통합되었다고 함

○ 연방검찰청(BA : 검사 18명)

연방범죄로 되어있는 범죄의 소추나 주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그 산하에 법무국이 있는데 주로 연방검찰청의 활동에 관련된 법률문제, 즉 연방공무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기소, 특별사건의 수사, 칸톤이나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등을 담당

※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는 초동수사 및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칸톤의 형사사법기관의 형사결정에 대하여 상소권을 행사할 뿐임.

○ 연방경찰청(BAP)

연방경찰청은 형사 및 공안관계의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을 행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통상 스위스의 연방경찰)

형사경찰 : 연방범죄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행하며 수사지휘권은 연방검사장에게 있으나 대부분 경찰에 위임하며 주로 정치범

죄, 통화·공문서위조·변조, 군사기밀 관련범죄 등에 국한.

공안경찰 : 연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감시·예방하는 것이 주임무이며 주경찰도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연방경찰이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주경찰과 협력해서 하기도 함.

* 조직체계 : 경무국, 법무·특별총국, 특별국, 법무국, 국제국 중앙사법경찰국, 지원국, 연방안전국 등으로 구성됨.

○ 중앙경찰사무국(Zentralpolizeibüro)

연방법에 의하여 각 주 경찰은 상호 또는 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협력의무를 갖고 있고 특히 범죄수사, 감식 등에 있어서 각종의 지도·원조를 행함. 중앙사무국도 그 하나이며 감식과와 중앙범죄기록과, Interpol과 및 중앙수사과가 있음

- 감식과 : 감식의 연방서비스센타로 각종 기술·감식작업 협력·협조를 하고 전국에서 보내온 지문카드나 피의자 사진 등을 집중관리
- 중앙범죄기록과 : 국내의 전과자 카드를 정리·보관하고 외국경찰과의 무선통신도 중계
- Interpol과 : 연방과 칸톤경찰당국간, 중앙경찰사무국과 인터폴사무총국간의 정보교환
- 중앙수사과 : 통화위조, 불법마약거래, 부

녀자 및 아동의 매매, 전쟁무기 불법거래와 같은 특별분야에 있어서의 범죄방지 및 진압

○ 연방경찰총국(BUPO)

연방경찰총국은 주로 다음의 임무를 수행

- 도망범죄인 인도와 국제사법 공조
- 재외 스위스인의 귀국 원조
- 망명외국인의 난민관계 사무
- 교통경찰
- 자동추적체제 및 경찰공보의 발행
- 테러 및 스파이 활동의 방지
- 무기·방사능물질 등의 거래 및 기술이전의 금지
- 여권의 발행
- 입법사무, 국제협정의 입안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국, 재외국민보호국, 국제사법공조 및 경찰사무국, 민법국의 4개 部를 둠

* 위폐·마취·마약·조직폭력범죄 등 대형범죄는 연방경찰국에서 수행하나 각 Kanton에 업무를 배분하여 협조체제 구축

○ 연방외사청(BFA)

외국인 관계의 입법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입·출국·거주관련 사항, 국제협약과 법률이 적정한 집행되도록 보증하는 일 등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법무국, 국제관계국 및 출입국 관리국을 둠

○ 특수경찰기관

대테러부대(베른의 경우 'Stem'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음), 공안부대, 과학연구소(무기, 폭발물, 공문서위조 규명 등과 관련한 연구), 경찰악대 등이 있다.

○ 기타

연방재무부 소속하의 연방관세청, 국경수비대(GWK) 등도 일정한 범위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 스위스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은 없으나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연합에 가입, 권익신장을 꾀하고 있음.

○ 수사권

연방이나 주·도시경찰에 있어서는 예심판사나 검사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 자체는 상호협조관계임.

- 취리히주의 경우 검사·경찰서장·주경찰대 간부 등에 영장발부권한이 인정됨
- 구속영장에 선행하여 24시간 체포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는 경찰에게도 인정됨

다. 주경찰(칸톤경찰)

헌법 기타 법률에 연방경찰의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주경찰의 권한

이며 스위스 경찰의 주류는 주경찰임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교통경찰이나 일반범죄의 수사 따위의 대부분은 주경찰의 권한
- 그러나 각 주는 그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경찰 조직과 형사소송절차를 가짐

◆ 베른 州

○ 주경찰과 시경찰이 있고 주민 대부분은 독일계이며 본부에는 경찰청장 밑에 형사국과 보안국 등이 있음(총 인원 1,300명)

- 형사국(200명) : 특별수사과(마약·경제범죄·조직범죄 등), 기술과(통상의 범죄수사, 감식사진 등), 수사·정보과
- 교통환경국 : 교통경찰과(사고처리계), 환경범죄·동물보호과, 소음대책과 등
- 지역경찰 : 외곽치안 확보를 위해 3개의 지역경찰이 사법경찰임무를 수행

○ 州내에는 100개의 경찰서(우리의 큰 파출소 수준)와 이동경찰이 있음

○ 도시경찰과 주경찰의 권한은 거의 같고 각각 범죄수사권이 있으며 연방검찰에서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시·명령이 아닌 상호협력관계라 함

베른주의 경찰관의 월보수는 23세까지 Fr.4753(한화약 361만원), 27세 이상 Fr.4895(한

화약 372만원) 정도(계급과 연령에 따라 상당액의 차이가 있음)이며 1인당 자녀수당, 보호수당, 야근수당 및 대기수당 등을 합해 Fr.500~Fr. 1,000(한화약 50~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된다.

◆ 제네바 州

- 프랑스계로 주로 프랑스식 제도를 채용하고 제복의 헌병대와 사복의 보안경찰, 정복의 행정경찰로 구성하며 동일한 경찰장 밑에 존재
- * 사법경찰은 미성년자과, 풍기단속과, 강력과, 마약과, 조직범죄과, 강도과, 절도과, 일반수사과로 나눔
- 관내는 모두 8개서로 나뉘어져 있고 헌병대 분견소가 20개소가 있음
- * 독립된 도시경찰은 없고 외국 귀빈방문을 대비한 경호경찰 80여명이 별도 운용됨

라. 도시경찰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칸톤마다 다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즉 ① 자치제 경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칸톤 ② 자치경찰제를 설치하되, 중요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칸톤 ③ 자치경찰제를 설치하고, 그것에 전통적인 경찰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칸톤(베른州가 대표)이 있다.

- * 취리히도시경찰은 1,650여명의 경찰과 250여명의 민간인 직원이 있고 크게 사법경찰, 보안경찰, 행정경찰로 구분됨.

2. 베른州 경찰학교(Polzeischule)

- 접촉인물 : Michel Affentranger(학교장)
- 수행사항
- 순경채용(수시모집)
 - 연령 20세 이상으로서 징병검사에 합격했을 것, 군대의 경험이 있고 하사관 이상의 계급에 있었으면 유리
 - 적어도 2개 국어(통상 독어와 불어)를 말할 수 있을 것
 - 신장 170cm 이상(여자 165cm)
 - 기타 용모, 언어, 태도, 품행도 고려
- 시험과목
 - 1차 : 독일어, 지리, 국가학
 - 2차 : 책임감 · 주의력 · 지능검사 · 인지능력, 불어, 체력검사
- 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州에 따라 다르나 대개 초임은 1년 이내 최장 15개월인 州도 있음
- 계급
 - 각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군대계급과 유사
 - * 베른州 : 순경, 병장, 하사, 상사, 소위(경위), 중위(경감), 대위(경찰국 차장), 중령(경찰국장)으로 되어 있음
- 교관수
 - 정규교관은 12명이나 외래강사로 의사, 법관, 변호사 등을 초빙함
 - * 기타 사항은 사격훈련, 체포술, 홍보비디오 관람 등 각종 교육자료 확보

3. 뉴사텔 사설경찰학교 및 연구소

- 접촉인물 : Fritz Lehmann(Directeur adjont), Monique Hähni(도서관장, 변호사)
- 수행사항
- 연구소 설립 : 1962년 설립
- 연간교육인원 : 4,000여명(일반시민 포함)
- 교육기간 : 2주를 1학기로 하며 6학기 교육(4학기는 실습위주)
- 교육종류
 - 교관교육
 - 간부교육
 - 재직중 교육
 - 시민교육(개인호신술,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대인관계, 경찰알기 등)
- *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 참조

- 경찰의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은 인정하되 대신 불충분하다고 판단시 검사가 재조사 지시를 할 뿐이며 상호협력 관계임
-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24시간내 조사후 법원에 바로 기소, 다만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에게 송치하며 대부분 검사의 역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대변할 뿐임
- 검사에게 경찰서 유치장 감독권은 없으며 시민단체에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확인·면담하고 인권시비가 있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함
- * 기타 자료 수집 목록 참조

4. 제네바 경찰서

- 접촉인물 : Rolf Spring(Chef de section), Christoph Herli(Chef de section)
- 수행사항
- 경찰관수
 - 전체 1,500명 : 제복경찰 780명, 사복경찰 320명은 수사경찰, 나머지는 400여명은 행정지원 및 공항경비대 소속임.
 - * 제네바 검사 수는 8명(검찰총장 1명, 검사 7명)
- 검사와의 관계

별첨자료 : 주요자료 수집내역

연번	자 료 명	수 집 처	비 고
1	스위스연방법 시스템	서 점	전체 법체계 설명
2	스위스 형사소송법	"	입문서
3	형법	"	주석서
4	경찰법	"	
5	형사소송법의 개념	"	종합해설서
6	연방경찰제도	연방경찰청	
7	연방경찰의 체포 절차	베른 대학	
8	연방경찰의 평가	연방경찰청	
9	INFOPRESS	"	검·경관계 기사모음집 포함
10	범죄학	서 점	
11	독일 형사소송법	"	입문서
12	범죄예방을 위한 핸드북	"	
13	취리히 형사체포절차 체계	"	
14	국가책임론	"	경찰임무를 중심
15	도로교통법 해설서	"	
16	경찰교육프로그램	뉴사텔 경찰학교	
17	검찰제도론	서 점	
18	연방경찰의 소개	연방경찰청	
19	연방제도 설명	연방경찰청	
20	베른주 경찰 관련 자료 - 경찰입문 : 조직체계론 - 경찰24시 - 교통경찰 - 특별임무 - 경찰인력 현황 등	"	
21	제네바주 경찰 관련 자료 - 제네바 경찰 소개 - 경찰조직체계도 - 형사절차도 등 10종	제네바 경찰서	
22	경찰채용 소개서	베른주 경찰학교	
23	경찰의 역사 등 각종 자료 10종	뉴사텔 경찰학교	
24	기타 홍보책자 10종	연방경찰청 등	

연구소 동정

□ 연구실장 및 연구관 인사발령

7. 17일자로 기획단에 근무하던 김종양 경정(승후)가 경남 고성서장으로 전출하였고 7. 22일에는 교통대책실 이영돈 경감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으로 교육파견(석사과정)하고, 9. 11일자로 범죄대책실의 임준태 경위가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관으로 전출하였고 9. 27에는 기획단에 근무하던 한광일 경정(승후)이 전북 청 보안과장으로 전출하였다.

이로써 교통대책실과 범죄대책실의 후임 연구관이 충원되지 않아 현재는 3개 연구실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9. 10일자로 수사보안연수소 연수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의욱 총경이 전입하였으며 9. 17일에는 경찰청 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이상량 총경이 전입하여 11. 4일자로 경찰대학 총무과장으로 전출하였다.

11. 15일에는 기획단에 근무하던 서의영 경정이 북부서 경무과장으로 전출하고 같은날

이재천 경감은 기동단 교육대장으로 전출하였다.

11. 24일에는 치안연구소 소장을 겸직하던 전병룡치안감이 서울청차장으로 전출되고, 새로이 전용찬 경무관이 동 소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이동선 총경이 연구실장으로 전임하였다.

자치경찰기획단 및 경찰개혁위원회 연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종겸 경무관은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이어 11. 29일에는 박정원 총경이 마포서장으로 전출하였다.

□ 제 8·9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연구소는 '99. 10. 19. 10:00~18:00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찰관의 의식행태 변화를 통한 경찰조직문화의 선진화 방안」 등 4개 주제를 가지고 제8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로는 경찰대

이상안 교수 등 4명과 토론자 12명 등을 포함, 각 주제를 상대로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99. 12. 10. 13:00~18:30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등 2개 주제를 가지고 동국대 이상현 행정대학원장의 사회와 10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제9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관객으로는 경찰관계자, 학계인사, 경찰관련학과 대학생 등 연인원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청중들의 자세가 진지하였고 특히 경찰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위기였으며 주제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의 과·계장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자료집을 참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